

고	시
---	---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8-82호

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,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6월 1일
강 남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
3. 정비구역의 면적 : 14,833.7㎡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학승
5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5길 50, 1층
6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
7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. 9. 16.
8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

구 분	대지 면적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연면적 (㎡)	최고높이 (m)	건축물의 주된 용도	층 수
변경전	12,543.19	41.09	249.95	49,318.03	47.35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지하3층 ~ 지상16층
변경후	12,543.19	40.39	249.95	60,521.51	47.35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지하4층 ~ 지상16층

9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(변경)

구 분	동수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 단위:세대			비고
			60㎡이하	60~85㎡미만	85㎡이상	
변경전	6개동	273	78(임대39포함)	133	62	
변경후	8개동	283	102(임대39포함)	148	33	

10. 정비사업의 변경사유

: 2017.12.28.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(강남구고시 제2017-168호) 및
2018년 제1차 강남구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결과반영
⇒ 근린생활시설 면적증가, 평형조정에 따른 세대수 변경 등 건축계획
변경

11.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(기부채납)에 관한사항

종 류	규 모(㎡)	시 행 자	비 고
공 원	553.30	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재건축조합	
도 로	1,737.21	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재건축조합	

12. 의제사항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

- 「주택법」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- 「건축법」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

13. 기타 인가조건 및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사업과(☎02-3423-6072)에 비치 보관. 끝.